

한국경제 새로운 발전모형과 공정사회 : 토론*

이 두 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상기 논문은 우선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 후, 이 정의에 입각하여 발전친화적인 공정의 기준을 찾는 순서로 작성되었다. 먼저 저자는 ‘경제발전의 문제’와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를 구분하였으며, 전자를 동태적이고 비선형적인 창발의 과정이라 묘사하고, 후자는 정태적인 배분의 과정이라 묘사한다. 즉 발전은 흥하는 문화유전자의 무한복제 증폭과정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조직이며, 기업조직은 각종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해서 흥하는 이웃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기능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 발전원리를 “흥하는 이웃을 우대함으로써 (차별화) 모두가 흥하는 이웃이 되려고 나서도록 할 때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큰 파도는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좋은 리더는 ‘흥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자’이며, 이를 잘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실패하였음을 각종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까지로 이어지

* 본 원고는 2011년도 한국경제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영학회, 동아일보 공동 주최로 개최된 공동학술행사(2011. 3. 17(목),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필자는 ‘흉하는 이웃 우대’ = ‘차별화’ = 등소평의 ‘先富論’ = 박정희의 ‘信賞必罰’이 결국은 비슷한 의미이며, 이것이 곧 발전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조직과 국가는 사회민주주의, 평등주의 (특히 결과의 평등),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며, 이는 발전역행적으로서 경제의 정체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역시 과거의 발전친화적인 정책에서부터 벗어나, 최근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진국 합정’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역행적 정책의 예로서 반(대)기업정서, 지역균형, 교육평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발전의 정의를 먼저 내린 후, 필자는 발전친화적 공정의 정의 또는 잣대를 도출하고 있다. 정치철학적인 공정은 ‘규범적 정의 (normative justice)’로서 부의 분배만 강조하고 부의 창출문제는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발전역행적이다. 그러므로 경제철학적으로는 ‘실증과학적 정의 (positive justice)’, 즉 발전친화적 공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발전친화적 공정’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까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통상 세 가지 개념으로 공정을 정의하고 있다. 즉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그것이며, 필자는 이 세 가지 중 ‘법 앞의 평등’, 즉 게임의 규칙을 만인이 지키는 것이 발전친화적인 공정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발전친화적인 공정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상기 논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토론자는 상기 논문을 읽은 후 무엇보다도 저자가 인용한 많은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사례의 방대함에 큰 인상을 받았다. 특히 발전의 정의 부분은 어느 경제발전론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도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장경제주의자로서의 소신을 자신 있게 밝히신 것 역시 매우 인상적이며 또한 많은 부분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부의 창출’을 고민하지 않는 분배의 모순을 지적한 점에 있어선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학자로서 전적인 공감을 느낀다. 또한 ‘공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자칫하면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을 배척하고,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이 주제를 논하였다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정공법적인 접근은 ‘발전’을 먼저 정의한 후, 이 정의에 부합되는 ‘공정’의 잣대를 찾았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순서를 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만일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였듯이 먼저 ‘공정’을 정의내리고 이에 부합되는 ‘발전모형’을 모색했다면, 이 글의 내용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 전체 논문의 결론은 ‘법 앞의 평등이 발전친화적인 공정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 앞의 평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안은 다소 부족하다는 인상이다. 또한 ‘법 앞의 평등’만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각종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결과 평등적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필자가 주장하는 발전친화적인 범주 내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즉 ‘결과적 평등’과 ‘발전친화적 차별화정책’ 사이의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결과 평등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등적인 결과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런 논의가 없다면, 상기 논문에 의하면 결국 소득분배개선의 문제는 ‘trickle down hypothesis’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각론적으로 보았을 때, 흥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것 즉 차별화 하는 것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 우대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각 나라의 정부들은 사전적 우대, 즉 특정 기업과 산업에 사전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차별화를 강조할 때는 반드시 사후적 차별화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이 중진국의 합정에 빠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최근 수년간 국민소득 2만불 정도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이지 ‘중진국의 합정’에 빠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10여년 사이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중진국의 합정’에 빠졌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계생산성의 체감 그리고 인구증가를 감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의 하락보다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제 성장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